

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입금지급에 관한 동의서 (예시)

(사용자명) 귀하

나(노동자명)는 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입금지급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입금지급 방법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자금이동업자(이하 ‘지정자금이동업자’)의 계좌(이하 ‘지정자금이동업자계좌’) 외에 예·저금계좌(은행계좌 등) 또는 증권종합계좌로의 입금지급도 함께 선택지로서 제시하였습니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탁한 지정자금이동업자로부터 뒷면의 유의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노동자명)는 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입금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 나(노동자명)는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입금지급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취급하도록 신청합니다.
- 나(노동자명)는 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입금지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아래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지정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자금이동을 희망하는 입금의 범위 및 금액

※지정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 수입상한액은 100 만 엔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입금의 범위 및 금액은 뒷면의 유의사항 ‘2.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을 확인한 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 정기입금 엔
- 나. 상여금 엔
- 다. 퇴직금 엔

2. 노동자가 지정하는 지정자금이동업자명, 서비스의 명칭, 계좌번호(계정 ID) 및 명의인(그 외 계좌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사항)

지정자금이동업자명
 자금이동서비스의 명칭
 계좌번호(계정 ID)
 명의인
 (그 외 계좌를 식별/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노동자의 전화번호 등))

3. 지정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지급개시 희망시기

년 월 일

4. 대체계좌로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점포명과 예금 또는 저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또는 지정하는 증권회사의 점포명 및 증권종합계좌의 계좌번호, 명의인

※본 계좌는 지정자금이동업자계좌의 수입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상당액의 금전을 노동자가 수취하거나 지정자금이동업자가 파산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금융기관의 점포명 또는 증권회사의 점포명
 계좌번호
 명의인

년 월 일

성 명

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입금지급에 관한 유의사항

자금이동업자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1년 법률 제 59호. 이하 '자금결제법')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재무부장에게 위임)의 등록을 받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서 환거래를 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1. 노동자의 동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탁한 지정자금이동업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이후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동업자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입금지급 방법의 선택지로서 현금 또는 자금이동업자계좌 이외에 예·저금계좌(은행계좌) 또는 증권종합계좌로의 입금지급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입금지급 방법으로서 현금 또는 자금이동업자계좌 등 2가지 선택지만 노동자에게 제시하였거나 형식적으로 선택지를 제시하였다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입금지급을 강제하였을 때, 사용자는 노동기준법(쇼와 22년 법률 제 49호) 제 24조를 위반하여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은 예·저금계좌의 '예금'과는 달리 환거래(송금이나 결제 등)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자금이동업자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때는 계좌로 자금을 이동하는 입금액은 환거래(송금이나 결제 등)에 이용하는 범위 내로 하고, 송금이나 결제 등에 이용하지 않는 자금을 체류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이동업자계좌로의 자금이동을 희망하는 입금의 범위 및 금액(희망액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자의 이용실적이나 이용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액 등을 설정할 때는 자금이동업자가 설정한 계좌잔고상한액(100만 엔 이하) 및 지정자금이동업자가 1일 지급상한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하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지급이 인정되는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 수입상한액은 100만 엔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지급 시 계좌의 수입상한액을 넘었을 때 송금할 금융기관명 또는 증권회사명 및 해당 계좌번호 등을 미리 등록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수입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는 미리 등록한 예·저금계좌 등으로 자금이동업자가 송금하지만, 그때 필요한 송금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3. 자금이동업자가 파산하였을 때의 보증】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때는 예금보험법에 근거한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일정액의 예금이 신속히 보호되지만, 입금지급이 인정되는 자금이동업자가 파산하였을 때는 예금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이동업자가 파산하였을 때는 자금이동업자와 보증위탁계약 등을 맺은 보증기관에 의하여, 노동자와 보증기관이 체결한 보증계약 등에 근거하여 신속히 노동자에게 계좌잔고의 전액이 변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이 부정하게 출금되었을 때 등의 보상】

입금지급이 인정되는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등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부정 출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 전액이 보상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실을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으며, 적어도 개별대응에 나섭니다. 단, 노동자의 친족 등이 환급받거나 노동자가 자금이동업자에게 허위설명을 한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노동자가 자금이동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자금이동업자에 의한 보상요건으로 정하였을 때는 적어도 해당 기간을 손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을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을 때의 채권】

입금지급이 인정되는 자금이동업자의 계좌잔고에 관하여 자금이동업자가 이용규약 등에 따라 유효기한을 정할 때는 계좌잔고가 마지막으로 변동한 날로부터 적어도 10년간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 환금성】

입금지급이 인정되는 자금이동업자계좌의 자금은 현금자동지급기(CD)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이용이나 예·저금계좌로의 출금 등 통화에 의한 수취가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1엔 단위로 환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월 1회는 노동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금이동업자계좌에서 환금할 수 있습니다.

(이상)